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읍·면·리·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4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10. 10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행정리 분리
 - 가창면 내 타 자연부락에 비해 가구수, 인구수가 많아 이장 업무 부담
 - 지방도로로 생활권 분리
 - 오랜기간동안 주민들이 분리 희망(삼산리 분리 추진위원회 구성)

2. 주요내용

- 리·반 조정 : 1리 증(334리 ⇨ 335리) (안 별표 2, 안 별표 3)

구분	읍·면	기존			개정			증감		이장 정수	비고
		행정리	반	세대수 (인구수)	행정리	반	세대수 (인구수)	리	반		
분리	가창면	삼산리	8	275 (509)	삼산1리	6	226 (424)	-	△2	-	
					삼산2리	2	49 (85)	1	2	1	

3. 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5. 10. 10.~10. 30.) 결과 : 의견 없음
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읍·면·리·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읍·면·리·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가창면 삼산리란 및 가창면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 면	법정리명	이장 정수	행정리명
가창면	삼산리	2	삼산1리 삼산2리
가창면 소계	12	29	29

별표 3 중 가창면 삼산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 면	리	반	구 역
가창면	삼산1리	제 1 반	707, 708, 750~860, 865
		2	801, 803, 805, 813, 861~920
		3	921~1100
		4	301~400
		5	174, 196, 200~300
		6	1~160
	삼산2리	제 1 반	401~651, 1110
		2	480~58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【별표 2】

이 장 정 수

현 행				개 정 안			
읍 면	법정리명	이장 정수	행정리명	읍 면	법정리명	이장 정수	행정리명
가창면	용계리	7	용계1리 용계2리 용계3리 용계4리 용계5리 용계6리 용계7리	가창면	용계리	7	용계1리 용계2리 용계3리 용계4리 용계5리 용계6리 용계7리
	오리	2	오1리 오2리		오리	2	오1리 오2리
	정대리	2	정대1리 정대2리		정대리	2	정대1리 정대2리
	냉천리	2	냉천1리 냉천2리		냉천리	2	냉천1리 냉천2리
	행정리	2	행정1리 행정2리		행정리	2	행정1리 행정2리
	상월리	2	상월1리 상월2리		상월리	2	상월1리 상월2리
	단산리	2	단산1리 단산2리		단산리	2	단산1리 단산2리
	대일리	2	대일1리 대일2리		대일리	2	대일1리 대일2리
	주리	3	주1리 주2리 주3리		주리	3	주1리 주2리 주3리
	옥분리	1	옥분리		옥분리	1	옥분리
	삼산리	1	삼산리		삼산리	2	삼산1리 삼산2리
	우록리	2	우록1리 우록2리		우록리	2	우록1리 우록2리
	가창면 소계	12	28		28	가창면 소계	12

【별표 3】

리·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

현 행				개 정 안			
읍 면	리	반	구 역	읍 면	리	반	구 역
가창면	삼산리	제1반	800~850	가창면	삼산1리	제1반	707, 708, 750~860, 865
		2	851~900			2	801, 803, 805, 813, 861~920
		3	901~920			3	921~1100
		4	31~40			4	301~400
		5	21~30			5	174, 196, 200~300
		6	1~20			6	1~160
		7	400~600		삼산2리 제1반	401~651, 1110	
		8	401~601		2	480~580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)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“행정동·리“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